

자격시험 등의 수수료(제41조의2제1항 관련)

구 분	수수료 금액
1.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	
가. 필기시험	20,000원
나. 실기시험	47,000원
2.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 발급	17,000원
3.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	17,000원
4. 법 제21조의6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재발급	5,000원

비고: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.